

韓國大學教育協議會法(案) 提案說明書



提案者 李 大 淳
(民主黨 國會議員)

I

우리나라 大學은 解放後 30餘年 동안에 量的으로나 質的으로 큰 擴充과 成長을 거듭하였고 그 教育成果는 지난 70年代 이후의 刮目할 만한 國家發展을 뒷받침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共認하고 있는 事實입니다. 그러나 韓國의 大學教育은 그 歷史的 發展過程으로 볼 때, 이제 새로운 轉換點을 맞이하였으며, 이에 따라 大學教育行政 역시 時代的, 社會的 要請에 副應하여 새로운 體制로 變化發展되어야 할 時點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의 大學教育은 그 質的 向上과 內質化의 圖謀, 公共性和 自律性的 調和, 大學間의 役割分化和 協同의 強化, 國際競爭力의 伸張 등 참으로 많은 課題를 안고 있으며 이를 解決하고 克服해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大學政策과 行政에 대하여 根本的인 再檢討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때마침 모든 分野에서 自律과 開放을 통해 創意的 發展과 새로운 跳躍을 이룩하고자 하는 새 時代를 맞이하여 大學政策과 行政體系도 그동안 官主導下에서 비교적 劃一化되고 一方的 規制로 일관했던 舊殼을 脫皮하여 보다 邁進한 開放體制와 汎大學的인 協同的 自律로 大學教育의 先進化를 追求해야 할 必要性이 절실하다 하겠습니까. 사실 第5共和國 出帆 이후 大學行政에 있어서 새로운 轉換點을 모색하려는 政策的 意圖로 최근 大學教育協議會가 組織發足된 것은 이미 이러한 方向으로의 前進를 意味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大學教育協議會의 目的과 機能을 보다 明確히 定立하고 그 持續的인 發展을 기약하기 위하여는 이를 法制化하여 그 運營과 活動을 支援할 수 있는 法的 根據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까.

II

이러한 立場에서 大學教育協議會法制定의 必要性을 보다 具體的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大學의 自律性을 伸張하여 民主的 大學行政體制를 確立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大學의 自治는 大學의 發生初期부터 大學教育의 至高한 傳統이며 끊임없이 追求해야 할 理念으로서 오늘날까지도 모든 大學의 基本的 屬性이고 또 特權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어려운 事情으로 이 分野에서도 크게 落後하고 있는 것은 여러 議員님들께서 잘 아시는 事實이니

다. 돌이켜 보면 解放即後와 6.25를 前後한 初期的 自由放任段階인 1945年 이후 1960년까지, 大學教育에 관한 經驗이 부족한 가운데 많은 大學이 亂立하여 大學人口의 急膨脹과 學事運營의 無秩序로 大學教育에 대한 社會的 不信을 초래한 바 있었읍니다. 이에 따라 1960年代와 70年代까지는 統制와 改革의 試圖期로서 이를 團束하기 위한 官主導의 規制가 갈수록 深化하여 요즘의 大學教育政策은 官僚의 劃一主義로 硬直化되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大學教育의 基本的 屬性이라고 하는 大學의 創意와 自治는 萎縮되고 모든 學事運營에 대한 各 大學의 所信과 責任感보다는 政府當局의 具體的인 指示命令에 安住하는 傾向마저 있어 이는 우리나라 大學의 보다 生動的인 學問研究와 勉學風土를 위해 學內外를 막론하고 다같이 憂慮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現實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우리나라 各 大學을 政府가 낱낱이 配慮하고 이를 指導하기에는 그 規模가 너무 크고 그 教育內容과 方法의 專門化, 多樣化로 인해 사실상 不可能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행히 근간에는 大學의 自律力量도 크게 向上되었으므로 大學에 대한 高度의 制度的 政策的 業務만을 文教部가 管掌하고 기타 學事運營이나 실제 經營에 관한 대부분의 業務는 各 大學自體의 創意와 自律에 일임하여야 할 것이며, 各 大學의 共通的 課題나 共同 關心事에 관한 事項은 政府와 大學間의 中間協議機構에서 各 大學이 參與한 가운데 自律的으로 協議決定하여 施行하고, 必要한 事項은 政府에 建議하는 大學間 協議機構의 活性化가 時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大學教育의 秀越性 維持나 質的 水準의 保障을 위한 大學評價를 法律的으로 制度化할 必要가 결실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大學評價制度란 各 大學의 運營體制나 各 學問分野의 教育 프로그램이 社會의 要求나 미리 設定된 一定水準(minimum requirement)에 合當하게 到達하고 있는 各 大學人들 스스로 評價하여 社會에 公表함으로써 全體 大學教育에 대한 社會的 信賴를 維持確保하고 各 大學의 競爭의 發展을 促進하는 制度입니다. 大學評價制度는 美國을 비롯한 先進外國에서는 오랜 傳統을 지니면서 大學運營과 各 學問分野의 業績評價認定制度로 發展되어 왔으며, 全體 大學의 教育水準維持를 위한 自衛手段인 동시에 教育과 社會現場의 專門家가 같이 評價에 參與함으로써 產學協同의 標本이 되고 있습니다. 이 制度의 具體的인 目的을 說明드리면

- 먼저 大學教育의 質的 最底水準을 設定하여 이를 繼續 維持하고 높여 가면서 教育의 卓越性과 效率性を 提高하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各 大學으로 하여금 自身の 教育目的과 目標를 再確認하고 이에 따른 教育프로그램의 編成과 施行, 教育效果의 成就度 등을 自體的으로 測定하도록 促進함으로써 부단히 自己更新과 自律的 發展을 誘導하는 데 目的이 있습니다.

- 또 이 評價制度는 大學을 內的 外的 壓力으로부터 保護하고 不實한 大學 때문에 充實한 大學들이 被害를 입지 않도록 判定 保護하는 防壁의 役割을 합니다.

- 또한 大學評價는 學生은 물론 學父母나 公共大衆으로부터 大學教育의 質에 대한 信賴를 確保하고 支援를 繼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基本目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大學評價制度는 그동안 實驗大學評價를 통해 어느 程度의 經驗이 蓄積되었고 現在는 大學教育協會가 사실상 이를 深化發展시키고 있음에 비추어, 이를 確固한 法律的 制度로 定着시켜 아직은 後進性을 免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大學들이 自律的 競爭을 통해 世界的 水準의 大學으로 成長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째, 大學間의 自律的 協力體制를 구축하여 各 大學의 特性을 維持하면서도 教育의 效率性を 提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大學들은 그 設立背景이나 歷史와 傳統이 서로 다르며 規模나 位置, 質的 水準 그리고 多樣한 教育프로그램에 있어서 個性과 特徵을 지니고 있습니다. 現在의 大衆社會에서 위와 같은 大學教育의 多樣性, 異質性은 불가피하고 한편으로는 必要的 것이기도 합니다.

各 大學은 위와 같은 特性을 開發하고 伸張시켜 나가면서도 오늘의 大學들이 共通的으로 안고 있

는 教授要員의 不足, 教育內容의 不實, 施設不足 및 財政難 등 大學教育에 대한 새로운 挑戰에 衆智를 모아 共同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必要性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各 大學共通의 課題와 負擔을 克服하고 解決하는 最善의 方案이 바로 大學間協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協同을 통해서 各 大學은 研究와 教育에 관한 資料와 情報의 傳達體制(Delivery System)를 形成할 수 있고 經費와 努力을 節減할 수 있으며 個別大學의 閉鎖性이나 獨斷을 排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大學教育에 대한 威脅과 壓力도 共同의 힘으로 克服할 수 있을 것입니다. 大學間 協同의 內容을 具體的으로 말씀드리면 教育內容이나 方法을 共同으로 研究開發하고 教授交流, 學點交換, 協同講義 등을 통해 不足한 教授資源의 效率的 活用을 기하며, 各 大學의 教育·研究施設의 共同活用이나 教·職員들의 國內外 研修의 共同推進 등 많은 協力프로그램이 開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大學間 協同은 資源의 浪費나 業務의 非能率을 除去하고 大學間的 障壁을 허물어, 우리나라 모든 大學의 互惠의 協力體制를 구축하는 좋은 契機가 될 수 있다고 確信하는 바입니다.

네째, 大學教育에 관한 專門的 研究機關의 育成이라는 目的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양한 研究機關이 開設 運營되고 있지만 아직 大學教育에 관한 專門的 研究機關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바로 우리나라 大學教育이 後進性을 免치 못하고 있는 重要한 要因이 되고 있음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外國의 수많은 大學教育研究機關과의 提携를 통해 教育과 研究를 위한 學術情報을 交換하고 우리나라 大學教育의 理論과 實際 및 大學教育政策에 관한 持續的인 研究開發을 전달하는 研究機關으로 育成하여 보다 深度있는 研究와 政策開發을 함으로써 行·財政上의 試行錯誤를 미연에 防止하고, 우리나라 大學教育을 先進國 水準으로 이끌어 가는 教育政策의 震源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모든 大學教育政策에 대한 보다 廣範한 教育現場의 意見이 收斂되고 충분한 事前研究와 準備를 거쳐 形成되도록 하여 大學教育의 專門性이 최대한 高揚될 수 있는 메카니즘을 確立하는 데도 重要한 目的이 있습니다.

다섯째, 政府와 大學間的 協력과 調整을 위한 役割期待에 관한 것입니다. 大學人들로 構成되는 同協會는 大學의 實情과 要求를 정확히 收斂하고 이를 分析·綜合하여 一次的으로 相互協調하고, 必要한 事項은 政府에 建議하여 政策에 反映케 하는 大學의 代辯機關이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政府의 大學教育政策이나 大學에 대한 國家社會의 要求를 一線 各 大學에 普及, 啓導하는 職能을 가짐으로써 政府와 大學間的 摩擦을 防止하고, 物議를 배제하는 中間調整 또는 架橋的 役割을 遂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入試節次 등을 비롯한 大學自體의 問題에 지나치게 政府가 干與하게 되고 끊임 없는 雜音과 社會的 物議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排除하여 大學의 問題는 大學人의 所信과 責任下에서 遂行될 수 있는 風土를 確立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私學에 막대한 國庫支援을 하고 있는 英國, 日本 등 先進國에서는 이러한 中間機關을 통해 政府의 財政支援과 그 實績評價 등을 代行시킴으로써 政府의 直接的인 介入을 피하고 自律的 機能에 맡겨 調和와 均衡을 圖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示唆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찌기 美國의 教育社會學者이며 高等教育 專門家인 마틴 트로우(Martin Trow)는 高等教育의 發展段階를 教育機會의 擴充面에서 少數精銳教育段階, 大衆化段階 및 普遍化段階로 구분하고, 大學은 그 量的 成長段階에 따라 教育目的과 機能이 變容되고, 行政 및 管理體制도 이에 適應하기 위해 變化와 改革이 不可避하다고 摘示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高等教育은 1945年 解放 당시 19개 大學에 7,800名의 學生數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專門大學을 包含하여 237개 大學, 100萬名의 學生規模로 擴充된 오늘, 우리는 지난날의 大學教育觀

이나 行政體制를 踏襲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Ⅲ

위와 같은 趣旨로 볼 때 韓國大學教育協議會法の 制定은

◦ 國家가 志向하는 自律과 開放의 時代的 要請에 符合되고, 또 2000年代를 向한 韓國 大學의 先進化를 위한 基盤을 造成하는 것이며,

◦ 文敎部의 大學關係業務를 水準 높은 政策的 次元으로 集中化시키기 위해 必要한 것입니다.

◦ 한편으로는 創意와 自律을 바탕으로 한 發展을 希求하는 大學人의 興望에 副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 大學教育의 共通課題를 各 大學의 參與와 協調 속에 自律的으로 協議·決定·施行하는 民主的 教育體制를 先尊하고 大學教育의 能率성과 經費 절감을 主尊해 가는 協力센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關心있는 同僚議員들의 意見을 모아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組織과 機能을 強化하고 그 支援體制를 確立하기 위한 特別法制定을 別案과 같이 提案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教育民主化 특히 大學教育의 先進化를 위한 劃期的 契機가 됨으로써 後日 이를 높이 評價받을 날이 올 것 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4. 法案의 主要骨子を 說明드리면

① 協議會 設立根拠를 마련하고 그 機能과 協議會定款 記載事項을 定하고 있습니다.(案 第2條, 第3條 및 第4條)

② 國家는 協議會運營에 必要한 經費를 補助할 수 있도록 하고 協議會에 寄附한 金錢 기타 財産에 대하여 租稅減免規制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所得計算의 特例를 適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案 第5條)

③ 國家는 協議會育成을 위하여 國·公有財産을 無償으로 貸付·使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案 第6條)

④ 協議會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教育機關 教·職員의 派遣 및 資料提供을 要請할 수 있도록 하고(案 第7條, 第8條)

⑤ 會員은 協議會의 決定事項을 遵守하여야 하며, 文敎部長官은 文敎部所管의 一定業務를 協議會에 委託·處理할 수 있는 根拠를 마련하였습니다.(案 第11條 및 第12條)

⑥ 또 各 大學의 發展과 大學教育行政의 適正化를 위해 重要한 手段이 될 수 있는 大學의 學事 및 運營全般에 대한 評價制度의 法的根拠를 마련하였으며(案 第13條)

⑦ 其他 協議會의 育成과 監督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을 定하는 內容으로 되어 있습니다.(案 第9條, 第10條, 第14條, 第15條 및 第16條)

韓國大學教育協議會法(案)

第1條(目的) 이 法은 韓國大學教育協議會를 設立·育成하여 大學의 相互協調와 大學運營의 自主性을 높이고 公共性을 昂揚하여 大學教育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設立) ① 大學(師範大學 및 教育大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長은 第1條의 目的을 達

成하기 위하여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設立한다.

② 協議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協議會가 設立된 때에는 大學의 長은 當然히 그 會員이 된다.

第3條(機能) 協議會는 다음의 機能을 갖는다.

1. 大學教育制度和 그 運營에 관한 研究開發
2. 大學學生選拔制度에 관한 研究開發
3. 大學의 財政支援策 및 그 造成方案
4. 大學의 教育課程 및 教授方法의 研究開發 및 普及
5. 大學의 評價
6. 大學 敎·職員의 研修
7. 文敎部長官이 委託하는 事業의 遂行
8. 기타 大學間協同에 관한 業務의 施行

第4條(定款) 協議會의 定款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事務所의 所在地
4. 任員 및 職員에 관한 事項
5. 理事會에 관한 事項
6. 事業에 관한 事項
7. 組織에 관한 事項
8. 財産 및 會計에 관한 事項
9. 會費에 관한 事項
10. 定款의 變更에 관한 事項

第5條(經費補助 등) ① 國家는 豫算의 범위 안에서 協議會의 運營에 필요한 經費를 補助할 수 있다.

② 個人·法人 또는 團體는 協議會의 施設 및 運營을 支援하기 위하여 金錢 기타 財産을 寄附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會에 寄附한 金錢 기타 財産에 대하여는 租稅減免規制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得計算의 特例를 適用할 수 있다.

第6條(國·公有財産의 貸付)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協議會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國有財産 또는 公有財産을 國有財産法 또는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無償으로 貸付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付 또는 사용의 內容·條件 및 節次에 관하여는 當該財産을 管理하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會가 締結하는 契約에 의한다.

第7條(敎職員의 派遣勤務) 協議會는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教育機關에 대하여 敎職員의 派遣을 要請할 수 있다.

第8條(資料提供) ① 協議會는 國家·公共機關·研究機關 등에서 發刊된 刊行物이나 資料 중에서 協議會運營과 관련이 있는 刊行物 또는 資料의 提供을 要請할 수 있다.

② 協議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를 提供한 者の 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에 相當하는 代價를 支給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會에 提供된 資料는 研究目的 외의 目的으로 사용할 수 없다.

第9條(事業計劃書 등) 協議會는 每會計年度의 事業計劃書와 豫算書를 作成하여 會計年度 開始전에 文敎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10條(決算報告) 協議會는 每會計年度의 歲入·歲出決算書의 當該年度의 事業執行實績을 添附하여 다음 會計年度開始 후 2月이내에 文敎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11條(決定事項의 遵守義務) 會員은 協議會의 總會나 理事會에서 決定된 事項에 非하여는 이를 遵守하여야 한다.

第12條(業務委託) ① 文敎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大學行政 및 學事運營에 관한 所管業務의 一部를 協議會에 委託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를 委託할 때에는 그 業務를 遂行하는 데 필요한 經費를 交付하여야 한다.

第13條(大學評價) ① 協議會는 大學의 教育發展과 大學行政資料의 확보를 위하여 週期的으로 大學學事 및 運營全般에 관한 評價를 實施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의 結果는 遲滯없이 文敎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14條(類似名稱의 使用禁止) 이 法에 의한 協議會가 아니면 韓國大學教育協議會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第15條(民法의 準用) 協議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 외에는 民法 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16條(過怠料) 第14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00萬元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第17條(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當時의 社團法人 韓國大學教育協議會는 이 法에 의한 韓國大學教育協議會로 본다.

② 이 法 施行當時의 社團法人 韓國大學教育協議會에 속하는 모든 財産과 權利·義務는 이 法에 의한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財産과 權利·義務로 보며, 그 財産과 權利·義務에 관한 登記簿 其他 公簿에 표시된 社團法人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名義는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名義로 본다.

③ 이 法 施行 전에 社團法人 韓國大學教育協議會가 행한 行爲는 이 法에 의한 韓國大學教育協議會가 행한 行爲로, 社團法人 韓國大學教育協議會에 대하여 행한 行爲는 이 法에 의한 韓國大學教育協議會에 대하여 행한 行爲로 본다.

④ 이 法 施行 전에 社團法人 韓國大學教育協議會에 補助金을 支給하였거나 支給하기로 한 것은 이 法에 의한 韓國大學教育協議會에 支給하였거나 支給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⑤ 이 法 施行當時의 社團法人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任·職員은 이 法에 의한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任·職員으로 본다.

※ 이 法(案)은 國會에 上程되어 현재 文公委員會에 계류중입니다.

大學教育 發展을 위한 學術세미나 開催

本協議會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共同으로 “大學教育 發展을 위한 學術세미나”를 지난 12月 14, 15 양일간 春川세종호텔 세미나실에서 開催하였다. 전국에서 10여명의 總·學長을 비롯하여 몇 研究機關의 책임자 및 重鎮教授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는 2000년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大學教育의 方向과 座標를 모색하는 進지하고 열린 主題發表와 討論으로 進行되었다.

主題別 發表者 및 討論者

일자	구분	주	제	발 표 자	토 론 자
1983. 12. 14		기초강연 : 韓國 大學教育 發展의 座標 —2000년대를 향하여—		申 泰 煥 (전학술원회장)	
		제 1 주제 : 高等教育의 大衆化와 秀越性		金 鍾 喆 (서울대교수)	趙英彬(전북대총장) 金榮禎(여성개발원장)
		제 2 주제 : 高等教育의 政策과 行政 —變化와 葛藤—		李 相 周 (강원대총장)	羅雄培(아주대총장) 李大淳(국회의원)
		제1,2주제 토론 사회자 : 崔至燕(강릉대학장)			
1983. 12. 15		제 3 주제 : 學術振興의 課題와 大學院 教育의 改善		朴 東 緒 (서울대교수)	權寧贊(건국대총장) 林 寬(과학기술원장)
		제 4 주제 : 國家 高級人力 需給體制와 高等教 育의 連繫		金 秀 坤 (KDI부원장)	李 寬(울산공대학장) 金容元(대우전자사장)
		제3,4주제 토론 사회자 : 鄭世華(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장)			
		종합토의 및 결론 사회자 : 徐明源(충남대총장)			

■ 主要 日誌 ■

- 10. 28 新任 文敎部長官에게 業務現況報告
(事務總長 및 專門委員)
- 10. 29 Westdeutsche Rektorenkonferenz(西
獨大學總長協議會)會長接見: 相互 情
報交換 및 業務協助 협의
- 11. 1 會誌 “大學敎育” 제 6 호 發刊 · 配布
- 11. 3 韓 · 美大學總長合同세미나 準備委員
會 第 1 次 會議 개최
- 11. 12 高等教育에 관한 外國資料送付(全國
98個 大學)
· Policies for Higher Education in
the 80s 外 4 種
- 11. 12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지역 高等敎
育發展地域 協力事業 參與申請: 유네
스코 韓國委員會
- 11. 16 大學敎育發展을 위한 學術세미나 準
備委員會 개최
- 11. 17 大學의 財政體制와 財政配分에 관한
研究(大學公納金適正化研究 分野) 第
2 次 會議 개최
- 11. 19 韓 · 美大學總長合同세미나 準備를 위
한 AASCU(美國州立大學總長協議會)
주최 會議 參席
· 金蘭洙(延世大), 李元高(慶熙大)
- 12. 1 '83年度 評價報告書 檢討 및 報告書
發刊에 따른 懇談會 개최
- 12. 14 大學敎育發展을 위한 學術세미나 개
최 (UNESCO 와 共同主催)
- 12. 16 大學敎育의 成果 및 國家發展寄與度
測定에 관한 研究委員會 會議 개최
- 12. 16 1984年度 國庫補助金 2 億원 確定
· 韓國大學敎育協議會法(案)이 國會
文公委員會 小委員會에 繫留중
- 12. 20 第11次 理事會 개최
· 1983年度 事業 推進實績報告
· 1983年度 追加更正豫算(案)
· 定款 및 規程改正(案)
· 1984年度 事業計劃(案)
· 1984年度 歲入 · 歲出豫算(案)
- 12. 21 '83年度 定期總會(第 5 次 總會) 개최
· 定款 改正(案)
· 1984年度 事業計劃(案)
· 1984年度 歲入 · 歲出豫算(案)